

2024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식사지원」

협력기관 공모 안내서

2023. 11.

세이브더칠드런



목 차

I.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II. 아동식사지원사업 소개

1. 사업배경
2. 사업개요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
2. 심사기준
3. 심사방법
4. 심사결과 발표

IV.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3. 서류양식 배포처
4. 접수방법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참고자료 】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본

I.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해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각지에서 빈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한국에서의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의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 지원사업과 국제개발사업, 인도적 지원(긴급구호)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II. 아동식사지원사업 소개

1. 사업배경

- 매년 전국 30만명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이 필요한 결식 위기아동으로 분류됨(2021, 보건복지부). 전국 4만 7천 개 이상 급식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 제과점이 3만 5,677개로 66%, 일반, 휴게음식점은 28%, 마트, 반찬가게가 1,934개로 5.3%에 불과함(2021,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를 1식 6천원~8천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나, 1회 사용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 대부분 집 앞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구입하고 있음. 2022년 상반기 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 건수 613만 9860건 중 편의점이 41.9%, 일반,휴게 음식점이 25.4%, 마트 16.6%, 제과 8.1%, 기타 8%로 나타남. 급식카드 사용처 중 편의점에서의 구매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동들은 비용 제한과 낙인감 때문에 식당보다 편의점에서 편중된 영양군의 식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사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결식위기아동을 발굴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 개별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식사조차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경제적어려움이나 돌봄 환경으로 인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아동
(장애부모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결식위기 저소득가정)
- 법정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12개월)

3) 주요사업내용

구분	내용	시기
결식아동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족센터) 대상 공모 통해 참여 기관 선정 - 지원아동발굴: 사업수행기관 1개소 당 최대 15가구, 최대 20세트 발굴(다자녀 가구의 경우 2세트 이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존 사례관리 대상 외 지역사회에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대상자 중복 확인, 신규대상자 추천, 업체정보 활용 등) ※ 지자체 급식지원 고려하여 사각지대 아동 우선지원 2023년도 사업참여 가구 지원 지속 가능 	2023. 12월
식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지원 전 아동 기본 건강정보 수집 실시 (알러지유무/신체계측-키,몸무게 등-년2회(시작 시, 종결시) 신체계측 통해 지원 후 변화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가정 당 주 2회(5식) 가정으로 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완제품 1회: 저염식, 건강식 위주 반찬으로 3식 가능한 분량으로 구성 ✓ 밀키트 1회: 아동이나 보호자가 쉽게 조리할 수 있게 전처리가 완료된 2식 분량의 밀키트 구성 ※ 완제품3식: 밀키트2식=>완제품2식:밀키트 3식 지원 가능 	2024.1~12월 (48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은 기관 영양사 및 외부의 검증된 식단표를 통해 구성 ※ 사업수행기관 직접 또는 외주업체(계약) 통해 지원 단, 외주업체(계약) 이용 시 사전 업체 방문 및 시식 필수 ※ 조리 완제품은 다회용기 사용 권장 	
특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식사를 위한 특식 지원 ✓ 식재료, 간식, 외식 메뉴, 과일, 디저트 등 가구별 특식 지원 	상동
건강한 한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 위한 영양교육 및 요리 활동 - 건강한 한끼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요리 활동(아동 연령, 보호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년 1회 ✓ 활동 시 영양교육 포함 ✓ 자체 운영, 외부강사활용, 외부프로그램참여 등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진행 	상동
주방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가구 중 주방 위생 개선 및 주방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지원 ✓ 조리도구 교체: 식기구/가스·전자렌지·후드/조리기구등 ✓ 주방 위생 개선: 싱크대 소독 및 방역 지원 	상동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자 격월 1회 이상 가정방문 필수 - 월 1회 이상 가정에 유선 등 식사 지원 현황 모니터링 - 식사지원 이외에 사업수행기관 차원의 사례관리 필수 - 사례관리일지 작성하여 관리 - 식사 업체 분기별 1회 모니터링(시식 포함) 필수 	상동

4) 지원금액 (* 선정 가구 수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당 식사지원 최대 15가구, 20세트까지 신청 가능
- 기관당 최대 47,700천원까지 신청 가능(※사례관리비 포함)

구분	산출내역	지원금액
식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트 당 216만원 기준 ※ 산정방법 ✓ 1식 당 9천원, 주 5식 지원 기준 => 1주 당 45,000원 ✓ 1주 당 45,000원 x 4주 x 12개월 = 2,160,000원 - 최대 15가구 최대 20세트 가능, 다자녀 가구 2세트 이상 가능 	<p>최대 4,320만원</p>



<p>특식지원</p>	<p>- 1가구 당 최대 5만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가구의 욕구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특식 계획하여 제공 ✓ 15 가구 x 5 만원=750,000 원 <p>-지원 내용 및 지원 회기는 자율적으로 운영</p>	<p>최대 75만원</p>
<p>건강한 한끼</p>	<p>- 1가구 당 최대 10만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1 회 이상 ✓ 15 가구 x 10 만원=1,500,000 원 <p>※산출 근거로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없으며, 지원 예산 내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획 수립하여 프로그램 활동비 사용</p>	<p>최대 150만원</p>
<p>주방환경개선</p>	<p>- 1가정 당 10만원 기준</p> <p>- 가정 당 최대 지원 금액 기준은 없으며, 지원 예산 내에서 지원 가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사용 계획 수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예시 1> 전체 지원 가구에 싱크대 소독 및 식기구 교체 지원</p> <p>예시 2> 평소 주방 환경이 열악한 일부 세대의 주방 환경 개선</p> </div> <p>※1가구의 주방환경개선비 금액 높을 경우 위기가동지원 신청 권고</p>	<p>최대 150만원</p>
<p>사례관리</p>	<p>-참여기관 사례관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가구 x 5 만원 x 15 가구=750,000 ✓ 가정방문 및 특식 배송 등 유류비 사용 (기관카드결제, 차량일지 작성) ✓ 택배요금, 배송비, 부가세 ✓ 스티커제작, 보냉백, 도시락 용기 구입 ✓ 사업홍보 및 간담회 현수막 제작 <p>※세이브더칠드런 명시(로고 삽입 및 활용 사전 검수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아동 간담회 다과비 사용 (1인5천원 이내) ✓ 자문비: 1 회 2 만원 기준(유선 및 이메일 자문기준) (예, 식단표 자문 -자문식단표, 지급증, 이체증) ✓ 업체 모니터링비 <p>※출장비,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불가,</p>	<p>최대 75만원</p>
<p>운영비</p>	<p><u>*아동권리센터 운영비 사용</u></p> <p>- 사업 수행(모니터링 등)을 위한 비용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관 10 만원 ✓ 참여기관 및 참여가구 방문 시 다과비, 교통비등 	<p>센터에 따라 상이</p>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

-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참고자료 참조)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함
- 2)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
- 3) 공모 신청 시,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 전체를 확보해 선정 즉시 지원 가능한 상태여야 함
- 4) 지원 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 5)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기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관 및 아동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2. 심사기준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해 협력 여부와 사업비를 결정함

- 1) **실무자 역량**: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업목적 이해, 사업관리 계획,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능력 등
- 2) **사업운영경험**: 신청기관의 결식 지원/영양지원 등 유사 사업 운영 경험, 사업운영 방법의 전문성, 업체 활용방안 등
- 3)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발굴 및 대상의 적절성**: 주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결식위기아동 발굴, 대표사례 1사례 제출(선정 이후 대표사례 2사례 추가 제출)
- 4) **사례관리 능력**: 기관의 아동 사례관리 전문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무자 전화 인터뷰(필요 시)

4. 심사 결과 발표

- 1) 2023년 12월 15일(금)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서 공문발송 및 이메일 연락
- 2) 선정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 사업참여동의서 등 추가 서류 제출

IV.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20(월) ~ 2023년 12월 8일(금)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금번 제출서류	1. 사업신청 공문 2. [서식1] 사업신청서(기관용) 1부 3. [서식2] 사업 담당자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3] 지원아동 명단 1부 (익명처리, 최소한의 정보 제공) 5. [서식4] 지원신청서(가구용) 1부 (대표사례 1건에 대한 지원신청서) 6. [서식5] 상기 [서식4]에 따른 지원신청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래 제시된 서류는 협력기관 선정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므로, 사업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추가 제출서류	[협력기관 대상] 1. 사업비 입금 통장사본 1부(기관 명의) - 잔액이 '0원'인 계좌 제출 2. 사업참여동의서 3.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지원가구 대상] 1. [서식 4] 지원신청서(가구용) 대표사례 3부 (신청 시 제출했던 대표사례를 포함하여 총 3사례에 대한 지원신청서, 전체 사례 제출X) 2. [서식 5] 상기 [서식4]에 따른 지원신청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가구 당 1부 4. 사업참여동의서(가구 당 1부) 5. [서식3-1] 지원아동 명단 1부 (추가 정보 기입)
지원가구별 추가 제출서류	[법정 저소득] (아래 서류 중 1개)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지원가구별 추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 -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p>[일반 저소득]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 모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부채증명서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류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에 따라 서류 일부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이브더칠드런과의 논의를 통해 대체 서류 및 생략 여부 결정

- ※ 각종 서류 제출 시, **개인식별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함.
개인식별고유번호 포함 시 제출서류는 일괄 반송처리 함
- ※ 선정 이후 제출 필요한 아동안전보호정책 관련 서류 및 사업참여동의서는 추후 제공 예정

3. 서류양식 배포처

- 첨부된 신청 서식 또는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4. 접수 방법

- 담당자 메일로 신청 서류 일체 발송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접수처(이메일)
대구아동권리센터	박영훈 대리	053-625-1600	https://ynchild.sc.or.kr/	yeonghoon.park@sc.or.kr

- 관할 지역

구분	관할 지역
대구아동권리센터	대구, 경상북도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협력기관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11/20(월) ~12/8(금)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 이메일 제출
신청서류 심사	12/11(월) ~ 12/15(금)	제출 서류 보완 요청 및 실무자 전화 인터뷰(필요 시)
선정 협력기관 발표	12/15(금)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 (공문/이메일)
추가서류 일체 제출	12/18(월) ~12/27(수)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 이메일 제출
실무자 간담회 / (사업준비 및 업체선정)	~ 2024년 1월 12일(금)까지	관할 아동권리센터 주관 사업설명회 및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
사업비 지급	2024년 1월 12(금)	
식사지원 시작	2024년 1월 15(월) ~	



[참고자료]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본

협력기관 직원을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세이브더칠드런 가치와 원칙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를 입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착취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약속합니다.

- **인식(Awareness):** 우리는 모든 직원, 협력기관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 및 성 착취의 문제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문제점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예방(Prevention):** 우리는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와 성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보고(Reporting):** 아동의 안전에 있어 의심 상황이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생시 이를 따를 것입니다.
- **대응(Responding) :** 우리는 아동학대 가능성의 우려가 있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하는 것을 아동안전보호정책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1.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방임 등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언어, 연령,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 고유의 의존성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3. 아동이 개성과 특별함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물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5.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 아동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7.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위반 혹은 의심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련자 외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02-6900-4488, childsafeguarding@sc.or.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